#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97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이인선·박충권·김성원

최은석 · 성일종 · 강선영

박상웅 • 임종득 • 이종욱

조경태 • 박성훈 • 김위상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물에 대하여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 등에 관한 사항이며, 특례 적용의 예외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시행령에서 특례 적용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특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44조제6항 신설).

#### 법률 제 호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⑥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제63
	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
	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